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산업과장</u> 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<u>새마을과장</u></p> <p>2. <u>사회과장</u></p> <p>3 ~ 7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<u>7일전까지</u>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축산과장</u></p> <p>.....</p> <p>1. <u>지적과장</u></p> <p>2. <u>환경보호과장</u></p> <p>3 ~ 7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5일</u></p> <p>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선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4조 본문중 “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”을 “서성대상,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”으로 하고, 단서중 “모범공무원포상”을 “서성대상, 모범공무원포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 2(서성대상) 서성대상포상은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부문에 공적있는 자를 선발한다.

1. 충효열상(충효열부문)
2. 지역개발상(새마을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부

문)

3. 교육상(교육부문)
4. 문화상(문화부문)
5. 체육상(체육부문)
6. 봉사상(봉사활동부문)

제12조내지 14조를 제11조내지 제13조로 한다.

제15조를 제14조로하고 제목중 “(위임규정)”을 “(위임규칙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
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</p> <p>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제11조 삭제</p> <p>제12조 내지 제14조 (생 략)</p> <p>제15조(위임규정) (생 략)</p>	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서성대상,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서성대상, 모범공무원포상</p> <p>제4조의 2(서성대상) 서성대상 포상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부문에 공적이 있는자를 선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효열상(충효열부문)</u> 2. <u>지역개발상(새마을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부문)</u> 3. <u>교육상(교육부문)</u> 4. <u>문화상(문화부문)</u> 5. <u>체육상(체육부문)</u> 6. <u>봉사상(봉사활동부문)</u> <p>제11조내지 제13조 (현행 제12조내지 제14조 와 같음)</p> <p>제14조(위임규칙)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		